

<별첨 1> 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계산사례

<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계산사례>

(단위 : 천원)

지급여력 합산항목	금 액	지급여력 차감항목	금 액
가. 납입자본금	33,000,000	가. 이연자산	-
나. 자본잉여금	54,000,000	나. 자기주식	1,000,000
다. 이익잉여금	13,000,000	다. 자본의 50%이상인 잠식된 회사 또는 조합 등의 주식 또는 지분	-
라. 제97조준비금	300,000	라. 선급비용	80,000
마. 비상위험준비금	13,000,000	마.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	800,000
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바. 대손충당금 부족액	800,000
사.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금액	17,000,000		
아. 후순위차입금	-		
합 계	130,300,000	합 계	2,680,000

○ 지급여력 : 127,620,000(=130,300,000 - 2,680,000)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중 큰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화 재	해 상	자 동 차	보 증	기 타 특 종	합 계
보유보험료	11,354,989	6,599,229	283,846,210	440,413	13,851,158	31,091,999
발생손해액	7,925,861	3,215,605	183,888,349	1,643,800	7,405,484	20,079,099
보험료기준 지급여력	2,361,838	983,285	51,660,010	65,622	914,176	㉠5,984,931
보험금기준 지급여력	3,122,789	662,415	44,684,869	338,623	747,954	㉡4,556,650

주: 1.보유보험료는 과거 1년실적, 발생손해액은 과거 3년간 평균실적

2.보험료기준산출액 : 보유보험료×보험료기준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 : 화재 20.8%, 해상 14.9%, 자동차 18.2%, 보증 14.9%, 기타 6.6%

3.보험금기준 산출액 : 과거 3년간 평균 발생손해액×보험금기준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 : 화재 39.4%, 해상 20.6%, 자동차 24.3%, 보증 20.6%, 기타 10.1%

○ 지급여력 : 55,984,931천원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의 투자위험의 지급여력기준(㉔의 1%)>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 보험료적립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합 계
금 액	114,462,003	497,732,135	137,750,994	◎749,945,132

- 지급여력 : 7,499,451천원
- 해외출재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㉔의 2%) : 102,344천원
 - 과거 1년간 해외출재보험료 : ㉔5,117,205천원
- 지급여력기준(가+나+다) : 63,586,726천원
- 지급여력 : 127,620,000천원
- 지급여력기준 대비 지급여력비율(마/라) : 200.7%

<별첨 2>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차 금융감독위원회 의결('98.4.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외국보험사업자와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외국보험사업자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사업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사업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광고) ①외국보험사업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신문, TV,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사업자의 상호 및 그 본점소재지
2.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③외국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내용에 당해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회사가 아니므로 당해 외국보험사업자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지면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이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 또는 화상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청취 또는 시청이 가능한 속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광고금지사항) 외국보험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사업자와 비교한 사항

제6조(보험계약체결 등에 대한 감독) ①감독원장은 외국보험사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사업자에 대

하여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방법)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사업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확인방법) ①거주자는 외국보험사업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보험업법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 ①감독원장은 199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통보한다.

②감독원장은 국내에서 영위되는 2이상의 보험종목이 결합된 보험상품 및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과 국내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이 결합된 보험상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③거주자는 이 규정의 시행전에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이 이 규정시행후에 국내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경우에도 외국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①협회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4.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종전의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7-10호('97.2.25)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규정중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보험감독원장으로 본다.

<별첨 3>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

재정경제원고시 제1997-18호('97.4.19)

1. 용어의 정의

- 가. 이 기준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하며,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 나. 이 기준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 다. 이 기준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 라. 이 기준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마. 이 기준에서 “최대출자자”라 함은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내국인 출자자중 가장 많이 출자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바. 이 기준에서 “대주주”라 함은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이 높은 순으로 출자비율을 누계하여 총지분의 100분의 51 이내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사. 이 기준에서 “자기자금”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달한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자금을 말하며,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일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계열회사의 처분 또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2. 주주의 자격

가. 내국인 주주

1) 보험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가) 대규모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위 이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금융기관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이하 “계열기업군”)중 상위 5위 이내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자. 다만, 위 기준에 의한 상위 10위 이내의 대규모기업집단중 참여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상위 10위 이내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각각 또는 합계하여 당해 보험회사가 발생하는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거나 이를 지배할 수 있다.

나) 생명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그 최대출자자(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가 아닌 자

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와 그 최대출자자(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대주주는 다음 “가)호의 요건을 갖추고 일반법인·금융기관·개인별로 각각 “나)호 내지 “라)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가) 공통

- ① 출자액의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자
- ② 부실기업정리대상(산업합리화대상) 법인 및 그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닌 자

나) 일반법인

- ① 비금융기관으로서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고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
- ②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과거 2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자
- ③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주권상장법인의 업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 이상인 자. 다만,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설립될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포함한 타법인 출자액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내인 자
-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의 최대출자자가 아니거나 당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

다) 금융기관

- ①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7,000억원 이상이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인 자

② 증권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이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③ 보험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조 5천억원 이상이고 감독기관이 정한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라) 개인

①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과거 2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의 최대출자자가 아니거나 당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기타

기존 합작보험회사의 내국인 최대출자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본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회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호 내지 “라)호의 대주주 요건중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외국인 주주

보험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국에서 보험사업허가(생명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사업허가, 손해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사업허가, 재보험업의 경우 재보험사업허가, 보증보험업의 경우 보증보험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

는 자. 다만, 외국인주주가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가 대한민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 주주에 대한 심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그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2)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

다. 주주자격의 적용

- 1) 순수내국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자격요건을 적용한다.
- 2) 합작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게는 내국인 주주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주주자격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 3)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주자격요건을 적용한다.
- 4)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주자격요건을 준용한다.

3.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 등

가. 최소납입자본금 : 300억원

나. 최소영업기금(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 30억원

다.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은 모두 원화로 납입하여야 한다.

라. 납입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으로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4. 허가신청서류의 제출

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첨의 서류를 제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보험사업허가신청서 및 각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들 서류와 기타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에는 공증인에 의한 공증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영사관 확인(영사관확인대상이 아닌 서류를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5. 허가심사기준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내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나. 주주 및 임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험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사회적 신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1) 이 기준에 의한 주주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 2) 내국인 대주주의 경우 금융부실거래실적,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기록, 주주배당(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적
- 3) 외국인 주주의 경우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주주배당(상호회사인 경우 계약자배당을 말한다) 실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
- 4) 임원의 금융부실거래실적, 형사상의 처벌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기록, 등기된 총임원의 2분의 1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

다. 허가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출자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 1) 신설될 보험사의 수지 및 손익전망, 모집인 또는 대리점 확보계획등 사업계획이 적정하고 양호한지의 여부(사업계획 또는 정관에 사업비를 이연하고 상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사업년도별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증자 또는 사업비 절감계획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라.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자 보호에 곤란함이 없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지의 여부

6. 허가절차 및 허가심시기간

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월내에 내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나. 내허가를 받은 자는 내허가일부터 6월내에 내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자본금 납입등 영업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본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내에 실사를 통하여 내허가조건을 이행여부 및 영업개시 준비의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 보험사업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자는 60일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마. 담당공무원은 허가신청자에게 허가신청서류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신청자 또는 그 관계자가 직접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허가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허가신청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2) 허가신청서류의 내용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요구에 대하여 허가신청자 또는 그 관계자가 그 이행을 게을리한 기간
-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

사. 재정경제원장관이 내허가 또는 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허가신청자에 대한 허가거부 사유의 통보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준용한다.

7.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준수사항

- 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보험, 은행, 증권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 나.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본국에 있는 본점과는 독립된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결손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내에 본점에서 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 다.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이익잉여금을 본점 등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때에는 송금일을 정하여 10일전에 보험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87.12.29 발표, '96.5.30 개정), 합작생명보험회사의 설립허가기준('88.3.18 발표, '95.12.27 개정) 전국규모의 순수내국생명보험회사의 허가기준('88.5.30 발표, '96.5.30 개정) 및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설립허가기준('87.6.15 발표, '95.12.27 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 3. 이 기준 시행당시 부칙 2의 폐지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록 1> 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

허가신청시의 제출서류

1. 내허가 신청시

- 가.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 나. 정관(안)
- 다. 사업방법서(안)
- 라. 보험약관(안)
- 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안)
 - “다” 내지 “마”의 기재사항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한다.
- 바. 설립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 연도별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 연도별 보험종목별 추정계약 성적표
 -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서
 - 연도별 영업조직(모집인, 대리점) 확보 및 영업계획서
 - 연도별 직종별 인력확보 및 운용계획서
 - 기타 참고서류
- 사. 설립후 5년간의 지급능력확보계획서
 - 예상지급능력규모
 -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증자 또는 사업비 절감등)
- 아. 발기인 회의 의사록
- 자. 발기인 이력서

- 차.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카. 주식인수계획서(안)
- 타. 합작계약서, 합작회사 대표자 이력서(합작보험회사의 경우)
- 파. 주주의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 포함
 - 주주가 외국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서 정한 서류 포함
- 하. 각서(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하며 서식은 별첨 2와 같다)

2. 본허가 신청시

- 가.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대표자 서명날인)
- 나. 내허가 신청시의 제출서류중 “나”호 내지 “사”호의 서류(내허가 신청시와 동일한 경우 제출 불요)
- 다. 본점 및 점포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라. 창립총회 의사록
- 마. 회사의 등기부 등록서
- 바. 자본금 및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아. 대주주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자.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차. 기타 내허가조건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록 2> 각서

수신 : 재정경제원 장관

각 서

본인은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업허가의 취소 기타 여하한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대한민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법령, 대한민국 정부 또는 보험감독당국의 명령·지시 및 보험회사간의 상호협약과 보험사업허가조건 및 보험사업 기초서류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이 발행한 보험증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점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의 자산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보험청구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부족하거나 우리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을 폐쇄할 때에는 본점이 직접 보험증권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지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보험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지시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토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의 명칭 :
대표자의 직위 :
성 명 :